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폐수처리방법별(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)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(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)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(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, 고정식관망 이용 등)을 적은 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(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 1부 	<p>수수료 1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,000원)</p>
<p>담당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